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확정

지난 2. 28. 제 · 개정 공포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으로 『방문판매법시행령』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2002. 7. 16. 국무회의에서 확정 · 시행되었다. 동 법률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현행	개정
공 통 사 항	· 법 적용 대상 · 집행기관 · 제재조치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보험제도 ·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	- 법 적용거래 : 통신판매 · 방문 판매 · 다단계판매 - 협의의 소비자만 보호 - 검 · 경찰, 지방자치단체 - 형사벌, 영업정지 - 공탁제도 - 없음 - 배송 외에 본인 동의 없는 사용 금지	- 전자상거래 · 전화권유 판매 · 계속거래 · 사업권유거래 추가 - 부업등을 위한 재화등의 구매자는 소비자에 준함 -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 시정조치 ·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수단 도입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도입 - 분쟁조정제도 도입 - 도용방지 주의의무 추가
전 자 상 거 래	· 전자거래 기록보존의무 · 결제업자 의무 · 결제수단발행자 보험 가입 · 조건 없는 청약철회 · 통신판매 중개사 책임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표시광고 6개월, 기타 거래기록 5년 - 대금환불 결제업자 협조의무 신설 - 10/100 이내로 공정위가 정한 금액 이상 보험가입 - 7일간 청약철회 가능 - 중개사 책임 명시 의무
방 문 · 다 단 계	· 청약철회기간 · 다단계판매원 경력사유 ·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 다단계방식의 위탁 · 알선행위 · 개별상품상한(다단계) · 부당 허용범위 · 계속거래 · 사업권유거래	- 방문(10일), 다단계(20일) - 없음 - 자본금 3억원 - 금지 - 100만원 - 2만원 - 없음	- 방문 · 다단계 14일로 통일 - 교사 · 공무원 등은 가입금지 - 자본금 5억원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 허용(단, 위탁 · 알선 의뢰한 자도 연대책임) - 130만원 - 5만원(다단계), 2만원(방문) - 과다위약금청구 금지 - 3개월, 30만원 이상 계약서 교부의무

※ 밑줄친 부분은 시행령으로 개정된 부분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7. 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가맹금의 유형으로서 가입당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개시지급금과 가맹점운영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지급금 이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과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을 규정하였고, 동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사무소에 비치하여 통보하거나, 직접전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서 게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상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가정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관적 경험, 평가 등의 비교는 허용 안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9. 1일부터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허용해 음에 따라 자기 상품의 유리한 부분을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비교광고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비교광고 허용 취지와는 달리 최근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비교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이나 체험, 경험 등을 근거

로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주관적인 경험, 평가 등을 근거로 한 비교광고는 광고내용의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행 지침에서도 허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침에 명문화하였다.

※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의 신·구문 대비표는 본지의 '부록(73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공정위, 계층별(부녀자) 소비자시책 관련 화장품 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부녀자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7. 4 ~ 8. 3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화장품 분야는 과거부터 재판매가격유지 및 거래지역 제한,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하여 '99~'01년 공정위의 화장품 분야의 사건처리건수는 33건으로 부녀자 계층과 관련된 분야 중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기록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체(4개), 수입 화장품 업체(2개), 인터넷쇼핑몰(3개), 대리점과 전문점(소매점) 8개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화장품 제조사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제한행위,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2002.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6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360개에서 364개로 4개사가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수는 351개로 변동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6. 1. 711개에서(신규편입 6개사, 계열제외 2개사) 2002. 7. 2. 현재 715개로 4개사가 증가하였다.

2002. 6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6.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7. 2.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11	1	5	6	0	2	0	0	0	2	4	715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60	1	3	4	-	-	-	-	-	0	4	364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51	-	2	2	-	2	-	-	-	2	0	351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6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6개사(주식취득 4, 회사설립 1, 기타 1)
- 제외 : 2개사(지분매각 2)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삼 성	애니카랜드(주)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주식취득	-	-	-
케이티	케이티 커머스(주)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공급업	회사설립	-	-	-
현 대 중공업	삼호중공업(주)	선박건조업	주식취득	-	-	-
두 산	한국중공업(주)	국내외부역업	기 타	-	-	-
제 일 제 당	(주)한국케이블 티브이금양방송	케이블티브이 방송국 운영	주식취득	-	-	-
케 이 씨	(주)울산방송	방송사업	주식취득	-	-	-
현 대 백화점	-	-	-	(주)울산방송	방송업	지분매각
태 광 산 업	-	-	-	(주)하나컴	위탁용역사업	지분매각

* 「삼성」, 「케이티」, 「현대중공업」, 「두산」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